

#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안광석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54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06일  
발 의 자 : 안광석, 경만선, 김춘례,  
김태호, 노승재, 오한아,  
유 용, 이종환, 최영주,  
황규복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」 제14조가 개정됨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이 장기간의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고 아동들이 이용하는 청소년 시설을 여가교육 시설로 지정하여 여가교육을 실시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여가 활성화 사업 대상자에 “18세 미만의 아동”을 추가함(안 제9조제 5호).
- 나. 여가교육 실시 시설에 “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청소년 시설”을 추가함(안 제10조제1항제4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5호 중 “사회적 약자(장애인, 노인,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을 말한다)”를 “사회적 약자(장애인, 노인, 18세 미만의 아동,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을 말한다)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청소년 시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9조(여가 활성화 사업) (생   략)</p> <p>1. ~ 4. (생   략)</p> <p>5. <u>사회적 약자(장애인, 노인,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등을 말한다)의 여가활동 지원</u></p> <p>6. ~ 7. (생   략)</p> <p>제10조(여가교육의 실시) ① (생   략)</p> <p>1. ~ 3. (생   략)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<u>4.</u> (생   략)</p>	<p>제9조(여가 활성화 사업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사회적 약자(장애인, 노인, 18세 미만의 아동,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등을 말한다)---</u></p> <p>6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여가교육의 실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청소년 시설</p> <p><u>5.</u>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

문서번호

2021072100000002

## 미참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안광석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  
이원상 팀장  
백소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1. 07. 21.

회신일 : 2021. 07. 21.

내용문의 : 02-2180-7955

###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

#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참부 근거 규정
3. 미참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예산정책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5호 사회적 약자에 ‘18세 미만의 아동’ 을 추가하고, 제10조제1항제4호 여가교육 실시 시설에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청소년 시설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, 선언적·권고적인 내용이므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- 안 제9조제5호 사회적 약자에 ‘18세 미만의 아동’ 을 추가하고, 제10조제1항제4호 여가교육 실시 시설에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청소년 시설을 추가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여가교육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용추계가 어려움

※ 「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」 제3조(정의)제4호 “여가교육”이란 여가활동, 여가시설 운용 및 관리,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, 여가사업 경영, 여가치유 등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.

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원상

주무관 백소영

☎ 02-2180-7955

e-mail : thdud36@seoul.go.kr